

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0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9.

제 출 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1일 최소 청소회수를 현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띄어쓰기

○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

⇒ 울산광역시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

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(안 제1조~제3조, 제5조)

○ 목적, 정의, 적용의 범위, 설치기준

다. 공중화장실 1일 최소 청소 회수 조정(안 제9조)

○ 1일 3회 이상 → 1일 2회 이상

3. 근거법규

가.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

다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09. 6. 8. ~ 6. 29)

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” 를 “울산광역시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”을 “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” 로, 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”을 “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, 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”을 “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”으로, “시행에 관하여”는 “시행에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”을 “공중화장실이란”으로, “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유료화장실”은 “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간이화장실·유료화장실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시·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제1항과 제54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 중 “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”을 “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을”로 한다.

제9조제1호 중 “3회”를 “2회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울산광역시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울산광역시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 명:울산광역시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</u>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<u>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과 <u>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<u>공중화장실 등</u>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한 <u>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유료화장실</u>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적용의 범위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3조제2호에서 “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·제7호·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·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·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”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·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.</p>	<p>제 명:울산광역시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「<u>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----- 「<u>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」----- ----- <u>시행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<u>공중화장실이란</u> ----- ----- <u>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간이화장실·유료화장실</u>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적용의 범위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” 이란 「<u>관광진흥법</u>」 제52조제1항과 제54조제1항에 따라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설치기준) ① (생 략) 1. ~ 4. (생 략) 5.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 치기준은 <u>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편 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 조제1항의</u>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5조(설치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 「<u>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」 제2 <u>조제1항</u>을 준용한다.</p>
<p>제9조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 (생 략) 1. 1일 <u>3회</u>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. 2. ~ 3. (생 략)</p>	<p>제9조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 (현행과 같음) 1. -- <u>2회</u> ----- 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								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
【별지 제2호서식】										【별지 제2호서식】																					
유료화장실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서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신고서								처리기간		유료화장실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서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신고서								처리기간													
								3일										3일													
신 청 인	상 호(명칭)									신 청 인	상 호(명칭)																				
	성명(대표자)				주민등록번호						성명(대표자)				주민등록번호																
시 설	주 소									시 설	주 소																				
	소 재 지				관리주체						소 재 지				관리주체																
현 황	관 리 인	(전화번호:)			설치년도					현 황	관 리 인	(전화번호:)			설치년도																
	규 모	부 지 : m ² ,		화장실 면적 : m ²							규 모	부 지 : m ² ,		화장실 면적 : m ²																	
시 설 내 역	대변기 수		소변기 수		대변기 유형					시 설 내 역	대변기 수		소변기 수		대변기 유형																
	남자용	여자용	장애인용	성인용	유아용	동양식	서양식				남자용	여자용	장애인용	성인용	유아용	동양식	서양식														
내 역	편 의 시 설		세면기	에어타올 (페이퍼타올)		환풍기	화장지		비누		방향제					내 역	편 의 시 설		세면기	에어타올 (페이퍼타올)		환풍기	화장지		비누		방향제				
	유	무	유	무	유	무	유	무				유	무	유	무		유	무													
1회 사용료		원								1회 사용료		원																			
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.										울산광역시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
신고인 : (날인 또는 서명)					신고인 : (날인 또는 서명)					신고인 : (날인 또는 서명)					신고인 : (날인 또는 서명)																
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										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																					
구비서류								수수료		구비서류								수수료													
1. 화장실 내부 평면도 2.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.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								없 음		1. 화장실 내부 평면도 2.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.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								없 음													

현 행										개 정 안											
【별지 제3호서식】																					
제 호										제 호											
유료 화장실 신고 필증										유료 화장실 신고 필증											
대 표 자	상 호(명칭)									대 표 자	상 호(명칭)										
	성 명										성 명										
	주 소										주 소										
관 리 인					(전화번호 :)					관 리 인					(전화번호 :)						
시 설 내 역	시 설 내 역	대변기 수			소변기 수		대변기 유형			시 설 내 역	시 설 내 역	대변기 수			소변기 수		대변기 유형				
		남자용	여자용	장애인용	성인용	유아용	동양식	서양식	남자용			여자용	장애인용	성인용	유아용	동양식	서양식				
편 의 시 설	편 의 시 설		세면시설		에어타올 (페이퍼타올)			환 풍 기			편 의 시 설	편 의 시 설		세면시설		에어타올 (페이퍼타올)			환 풍 기		
	대		대		대			대				대		대		대					
1회 사용료					원					1회 사용료					원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</p> <p>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</p>													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울산광역시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</p> <p>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</p>																					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709)

1. 의안명: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. 9. 2(수)

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 : 2009. 9. 7(월)

라. 위원회 심사 : 2009. 9. 17(목)

3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1일 최소 청소회수를 현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제명 띄어쓰기
 - ▶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
 - ⇒ 울산광역시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(안 제1조~제3조, 제5조)
 - ▶ 목적, 정의, 적용의 범위, 설치기준
- 공중화장실 1일 최소 청소 회수 조정(안 제9조)
 - ▶ 1일 3회 이상 ⇒ 1일 2회 이상

4. 근거법규

-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및 제89조
- 나.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
- 다. 「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
- 라. 「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 규칙」

5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성낙팔)

-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에서 “간이화장실”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도 “간이화장실”을 추가코자 하며
- 조례 제3조(적용범위) 중 관관진흥법의 관광지 지정 관련 조문 “제50조제1항 및 제3항” 이 “제52조제1항”으로 변경 되었으며, 조성계획 수립 관련 조문 “제52조제1항”이 “제54조제1항”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과
- 공중화장실의 청소 회수를 1일 3회 이상에서 1일 2회 이상으로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
-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자구수정 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